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ne 9,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호주: 해외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정상가격 산정 관련 초안 지침 발표

2025 년 5 월 29 일, 호주 국세청(ATO)은 해외에서 유입된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의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담은 실무지침(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초안(PCG 2025/D2)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납세자가 이전가격 관련 세무 위험을 자가 진단하고 이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

이번 초안은 2024 년 4 월 개정된 이전가격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 투자자(general class investors)의 경우,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정상가격 기준에 부합하며 상업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차입금이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sation)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검토 없이 인정되었습니다.

요약

본 지침은 납세자의 세무 리스크 수준을 녹색(저위험), 적색(고위험), 청색(평가 불가)의 세 가지 구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청색' 구간에 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위험의 의미가 아닌 본 지침을 통해 위험 수준을 평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침은 저위험 및 고위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차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 자금 조달 조건, 그룹 정책, 주주 수익률 등)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에 의한 명시적 보증(explicit guarantee)이 수반된 차입 구조는 고위험으로 간주되며, 이는 부채 성격 판단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도 일치하는 입장입니다.

멕시코: 이전가격 세무조사 고도화를 통한 세수 증대

2025년 5월 26일, 멕시코 국세청(SAT)은 세무조사 전략 및 2013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에 대한 대규모 납세자의 징수액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13~2018년에 대한 징수액은 28,966 백만 멕시코 페소(약 2조 664억 원)이며, 2019~2024년에 대한 징수액은 106,117 백만 멕시코 페소(약 7조 5,704억 원)로, 두 기간 사이의 징수 증가율은 약 367%에 달합니다.

한편, SAT는 올해 초 "2025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며 금년도 세수 목표인 5.3조 멕시코 페소(약 378조 원)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은 다음 부문들을 주요 타겟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주로 다국적 그룹에 속한 기업들로 구성된 대규모 납세자(멕시코 전체 세수의 약 52%)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
|-----------|---------------|
| - 자동차 | - 전자기기 |
| - 접객 및 숙박 | - 보험 및 금융 서비스 |
| - 주류 및 담배 | - 제약 |
| - 금속/제련 | - 민간 의료 서비스 |
| - 건설 | - 석유 및 가스 |
| - 디지털 플랫폼 | - 민간 교육 서비스 |

SAT가 발표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세무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를 식별하기 위한 신기술의 지속적인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및 고용 관련 의무 이행 여부, 유통 및 마케팅 과정에서의 이상 행위 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법
-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통계 기반 학습 모델
- 부가가치세(VAT), 특별소비세, 소득세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환급 신청 건 모니터링

KPMG 의견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조사가 예상되는 기간에 대해 이전가격 관련 위험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APA)와 같은 법적 수단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상호합의절차(MAP)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기준-2024-법규국조-0218, 2025.03.18

제목: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 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법인은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Juros sobre o Capital Proprio(이하 "JCP")를 지급 받았고, JCP를 배당으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제기
- JCP는 브라질 세법에만 특별히 규정된 개념으로서, 브라질 법인이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주주에게 금원을 지급할 경우, 그 브라질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로, JCP는 브라질 세법상 이자에 해당하여 JCP를 수취한 주주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됨(15% 원천징수)

2.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JCP가 한·브라질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배당에 해당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님.

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0조【배당】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03 관세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1. 가격신고제도 주요 개편사항

(1) 개요

2025년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 거래 형태별로 규정된 자료들을 통관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수입가격 결정 방법을 포함하여 가격신고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2) 기존 가격신고제도의 문제점

① 일률적 자료 제출 요구

개정 전 가격신고 제도는 과세가격 심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실제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② 제출 자료의 반복 제출

특히 로열티 계약 등 같은 계약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성이 고려되지 않아 매 수입 건마다 같은 계약서를 반복적 제출하는 비효율이 존재하였습니다.

③ 제출자료의 기준 부재

아울러 제출이 요구되는 자료의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실제 거래의 가격결정 구조나 비용배분 방식과 무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3)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상세

① 거래 형태별 제출자료 명확화

거래 형태별로 구분된 8개 분야*의 제출자료 목록이 명확화되어 납세자는 자신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 자료만을 선별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8개 분야: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거래

② 반복 제출의 면제 및 최초 1회 원칙

동일 조건의 반복 수입 거래 시, 최초 1회 제출한 과세가격 관련 자료에 대해 이후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는 경우 추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③ 과세자료 제출 생략 요건 도입

납세협력 프로그램 진행 중인 AEO 공인기업, ACVA 참여기업, 직전 연도 기준 납부세액이 5억 원 미만인 납세자는 해당 제도 적용 시 과세자료를 제출이 면제됩니다.

④ 계도기간 및 의무화 일정

본 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본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4)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상세

① 수입가격 결정방법 선택 항목 도입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 가격신고서 상 수입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문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과거 추상적인 질문이 삭제되고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선택 기재하도록 요구됩니다.

<가격신고서 신설 내용>

(c)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비교가능제3자가가격법 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 ④ 거래순이익률법 ⑤ 이익분할법 ⑥ 기타 합리적인 방법

(d)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국내판매가격(표준판매가격·평균판매가격·순판매가격 등) × (1-할인율·재판매마진율)
- ② 국내판매가격(표준판매가격·평균판매가격·순판매가격 등) - 목표매출이익(-운임·관세 등)
- ③ 제조원가(표준원가·제3자구매가격 등) × (1 + Mark up율)
- ④ 제조원가(표준원가·제3자구매가격 등) × 계수
- ⑤ 기타

② 적용 신고번호 기재 의무화

제출된 과세가격 관련 자료 또는 결정방법의 적용이 최초로 이루어진 수입신고에 대해,

해당 수입신고번호를 연도 기준과 함께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5) 과세자료 미제출 시 제재사항

납세자가 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담보제공 생략 특례 중지, 관세조사 또는 세액심사 대상 선정 및 기타 관세법령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1 회 30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KPMG 의견]

본 제도는 과세당국이 수입 초기 단계에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고오류를 줄이고, 사후 심사 및 관세조사 대상 선별 시 활용함으로써 자원 집중을 가능하게 하여 관세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 12월부터 해당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수입 유형과 거래 구조에 따른 거래형태 별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형화된 내부 제출 기준과 문서화 체계를 조기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AEO 또는 ACVA 등 납세 협력 프로그램 참여 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 참여 여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